

〈제 563호〉

- 주간 - 광주 경영계

**KEF**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I. 희원사 등정

### 광주은행

#### ◆ KJ카드, 뭉치면 쓸어진다! 연말 이벤트 펼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뭉쳐서 多 챙기자! 광주은행 KJ Card 연말 이벤트'를 실시 한다. 이번 이벤트는 ▲Winter업종에서 뭉치면 쿠폰! ▲할부 수수료? 뭉치면 무이자! ▲뭉치면 캐시백! 총 3가지 이벤트로 진행한다.

연말 이벤트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보해양조

#### ◆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 순천지점 봉사단 및 직원 50명은 지난 5일 순천의료원공원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사랑의 밥차 배식 봉사, 설거지, 주변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밥차 운영 식재료비 2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보해양조 순천지점 기부금은 밥차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사랑의 밥차는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순천의료원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

## 해양에너지

### ◆ 서부발전·광주MBC와 신재생에너지 협력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광주MBC 송일준 사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각각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수소생산 및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의 주요 역할은 한국서부발전소가 타당성 검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확보, EPC(설계, 조달, 시공) 수행 등 사업개발 주관, 해양에너지는 사업부지 발굴 및 확보 지원과 도시 가스 공급, 광주MBC는 지자체 협력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II. 광주경총 소식

### 〈광주경총 제69회 이사회〉



본회 최상준 회장 등 이사회원 29명(위임이사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69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입회를 신청한 4개사에 대한 신입회원 가입 승인과 일반회계 예산 변경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 승인했다. 또한 유연근로시간제와 노사관계 동향을 보고 받고, 최근 노동동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6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일 광주경총 노사 민정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6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 및 2019년 근로조건 실태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 사무국 일지(11. 4 ~ 11. 8)

11. 4 (월)	●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11. 7 (목)	● 제6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
11. 5 (화)	● 기업주치의센터 성과보고회 참석		
11. 6 (수)	● 제69회 이사회 개최	11. 8 (금)	● 제1466회 금요조찬포럼 ● 전남지노위 심판회의 참석

## II. 광주경총 소식

### 〈제1466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1월8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김홍묵 전,SK그룹연수원장을 초청 <행복한 조직을 이끄는 조직문화와 리더십>이란 주제로 제1466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문화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방식이다. 조직문화는 관찰이 가능한 가시적 영역인 의식, 전설, 슬로건, 행동, 구체화된 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식에 공유된 가치관 행동적 가설인 신념, 태도, 감정으로 구분된다. 모든 기업의 고민은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다. 각 기업마다 독특한 경영방식과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업의 공통점은 첫째, 핵심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구성원이 동일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결집하는 것이고 둘째, 그 기업마다 고유하고 독창적인 일처리 방식이 있으며 셋째, 특정인에 좌우되지 않고 정책과 시스템에 의한 처리 방식이다.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인데 행복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공통점은 솔선수범, 신뢰형성, 공감과 소통, 자가성찰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오직 세상에서 자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 III. 노사 및 관계동향

#### 1. 노사 동향

##### ■ 고용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실시 예고 (10.31)

- 고용부는 10. 31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11. 4 ~ 12. 6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계획 발표
  - 금번 근로감독은 화기·전열 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과 추락 방지 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
  -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11. 4 ~ 15 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발족 (10.31)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0. 31 업종별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
  - 보건의료위원회는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를,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
  - 보건의료위원회는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 ▲임금실태 파악을 통한 합리적 개선 방향,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의제로 확정
  -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버스운수산업 공공성 강화, 운수종사자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

- 경사노위는 조만간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와 의제별위원회인 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도 발족할 계획

##### ■ 민주노총은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對국회 투쟁 방침 (11.9)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민주노총은 11. 9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예정
  - 앞서 민주노총은 10. 29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對국회투쟁** 계획을 발표했으며, 10. 31 국회 앞에서 2,500여명 규모의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 진행
  -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내 생산시설 점거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심의되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10. 31)
- 한편, 민주노총은 11. 30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정기 국회 법안처리가 집중되는 11월 末 ~ 12월 初 ‘사회적 총파업’을 추진할 계획

#### ■ 노동계는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절차 진행 예정

- 한국노총은 2020년 1월 차기 임원선거 예정
  - 일부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후보군들의 총선 비례대표 진출 여부, 후보간 러닝메이트 구성을 통한 세결집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 한국노총 차기 임원선거 출마선언 후보자 :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8. 22),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9. 10), 허진 금융노조 위원장(10. 29)
-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12. 19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위원장 후보로 3명이 공식 출마를 선언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현재까지 위원장 후보 공식 출마자는 유주선 現 금융노조 사무총장, 한창규 現 금융노조 전략기획본부 부위원장, 박홍배 現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 후보자 등록은 11. 18부터 3일간 진행

-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12월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위원장 입후보자 확정
- 위원장 입후보자는 2명으로 이재진 NH투자증권 前 노조위원장과 이경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現 부위원장임.

※ 주요 선거 일정 : 후보자 등록 마감(11. 4), 임원선거(12. 17 ~ 19)

#### ■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파업 예고 (11.5)

- 철도노조는 11. 20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발표(11. 5)
    -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019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철도노조 주요 요구 내용 : ▲임금총액 4% 인상(사측 임금총액 1.8% 인상), ▲4조2교대제 전환(現 3조2교대제), ▲KTX-SRT 통합 등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2. 판례 동향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함(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철원군 소속 환경미화원임.
  - 철원군과 환경미화원은 근로계약에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고,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철원군이 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가로청소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2심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드렸으나,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함.

### 2. 판결요지

- (기존법리)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회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함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위 대법원 판례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됨.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철원군 사이의 근로계약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액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반면 철원군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은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음.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의 경우 8시간, 토요일의 경우 4시간으로 하고, 기준임금 월액에서 총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음.
- ※ 총 근로시간 226시간 =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
-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존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봐야함.
    - 1·2심에서는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43시간이라고 봄.

### 3. 시사점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금번 판결은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존 대법원(97다28421)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임.
- 동 판결은 기존 법리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4시간)으로 보고 있음.

끝.